

증거보전신청

신청인 1. 최경덕
2. 박근용

위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피신청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관청 서울지방경찰청

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해야 할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2015. 4. 16. 19:00부터 24:00까지, 2015. 4. 18. 13:00부터 24:00까지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 광화문 부근에 설치된 9대의 CCTV(광화문, 경복궁역, 시청, 세종로, 서울역,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에 설치된 CCTV, 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하겠습니다)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집회 및 시위 감시)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하였고 평시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완료 0:55

-1:22



2. 증거의 표시

가. 증거보관장소

서울지방경찰청(교통상황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나. 보전대상증거

2015. 4. 16. 19:00부터 24:00까지, 2015. 4. 18. 13:00부터 24:00까지 이 사건 CCTV의 영상녹화물

다. 증거보전방법

문서제출명령(동영상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 포함)

3. 증거보전의 사유

가. 이 사건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신청인 최경덕은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박근용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에 소재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광화문 인근에서 2015.4.16.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 및 같은 달 18.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참여했던 집회가 진행되던 중, 특히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이 사건 CCTV의 송출이 차단되고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소명자료1)¹⁾. 또한 이 시간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CCTV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소명자료2)²⁾.

이 사건 CCTV는 엄연히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를 이용해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은 이 사건 CCTV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용임이 분명합니다.

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과의 관련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자 이 사건 CCTV를 임의 조작하여 촬영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등의 방법

1) <http://news.jtbc.joins.com/html/350/NB10858350.html>

2) <http://news.jtbc.joins.com/html/450/NB10867450.html>

(Zoom-In 기능 사용)으로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광화문 인근의 집회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벽 설치 등 비슷한 방식으로 집회를 관리했던 2015.4.16. 있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제 역시 촬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회 현장 감시는 신청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고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위법행위로 해당 CCTV에 신청인들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신청인들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의사에 반해 촬영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보전의 필요성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지침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자체가 삭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점을 등을 고려한다면, 조속히 증거보전을 통해 이 사건 CCTV 촬영동영상과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조작해 촬영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 CCTV의 목적 외 사용이나 줌인(ZOOM-IN)기능 사용을 통해 어떤 장면을 촬영한 것인지는 이 사건 CCTV의 촬영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줌인 기능을 사용하였는지는 해당 촬영영상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소명자료1. jtbc 2015.4.21.자 기사
2. 소갑제2호증 소명자료2. jtbc 2015.4.27.자 기사

첨부서류

1. 소송위임장
2. 담당변호사지성서

2015. 4. .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